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
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

2015년 1월 9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17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서식제공, 증명민원 접수처리”를 “서식제공”으로, “민원 접수처리,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연계”를 “민원 접수처리”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산정보과”를 “기획예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산정보과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 구축, 기능개선·보완 등 정보통신기술 관리
2. 기획예산과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 활성화 대책 강구 등 전체적인 운영 총괄
3. 전 부서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사항의 타당성 검토 등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처리상황에 대한 안내기간은 다음과 같다”를 “처리상황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홈페이지와 유료 또는 무료로”를 “홈페이지와”로, “있으며 연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1조 중 “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(행정안전부훈령)”을 “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전자민원창구 기능) <제목 개정 2012.06.22.>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민원안내 및 <u>서식제공, 증명민원 접수처리, 기한 있는 민원 접수처리,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연계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5조(전자민원창구 기능)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서식제공</u>----- ----- <u>민원 접수처리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) 전자민주주의는 <u>전산정보과</u>에서 총괄운영하며 세부 내용별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전산정보과: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, 의견수렴 결과 주관부서 통보,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</u> <u>강구, 시스템의 기능개선·보완, 시스템 종합 관리 등</u></p> <p>2. <u>기획예산과: 정책제안/토론 메뉴에 등재된 제안내용 관리, 주관부서 의견 안내여부 관리, 정책시행 결과 평가 등</u></p> <p>3. 전 부서: 주민투표 및 의견수렴 문안작성 시 전산정보과에 의뢰,</p>	<p>제19조(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) ---- ----- <u>기획예산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전산정보과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 구축, 기능개선·보완 등 정보통신기술 관리</u></p> <p>2. <u>기획예산과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 활성화 대책 강구 등 전체적인 운영 총괄</u></p> <p>3. 전 부서: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정</p>

주민투표 및 의견수렴 결과 홈페이지에 안내,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사항의 타당성 여부 검토 후 홈페이지에 안내

제20조(운영방법) ①·② (생략)

③ 주민투표 또는 주민 의견수렴 후 정책반영 현황 및 처리상황에 대한 안내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주민투표 및 주민 의견수렴 사항은 정책 결정일로부터 5근무일 내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게시

2.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사항에 대한 회신은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홈페이지에 안내

제28조(홈페이지 간 상호연결) ①·② (생략)

③ 강남포털사이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와 유료 또는 무료로 상호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강남포털사이트 메인 메뉴에

책사항의 타당성 검토 등

제20조(운영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처리상황은
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<삭제>

<삭제>

제28조(홈페이지 간 상호연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홈페이지와 -----
----- 있다.

<삭제>

연결되며 연결기간이 30일 이내
인 경우는 강남포털사이트 운영
부서장의 결정에 의하여 연결
여부를 결정하고, 연결기간이 30
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책회
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.

2. 메인 메뉴를 제외한 서브 메뉴
와 연결할 경우에는 운영 부서
의 장이 결정한다.

제31조(비밀번호 관리) 운영부서의
장은 관리 담당자의 비밀번호를
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(행정안전
부훈령)에 따라 관리한다.

<삭 제>

제31조(비밀번호 관리) -----

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
처리규칙-----.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전자민주주의 개념과 총괄부서를 명확히 하고, 현행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강남구 홈페이지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증명민원 접수처리 절차를 현행화 하고, 전자민주주의 총괄 부서를 기획예산과로 변경함